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2021. 6. 10.)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1-51
----------	-------

2021. 6. 10.  
전문위원 신준호

##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회사무국)
- 나. 제 출 일 : 2021. 5. 21.
- 다. 회 부 일 : 2021. 5. 24.

## 2. 결산현황

### 가. 세입결산

-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98만3,230원으로, 71만4,720원이 증액된 669만7,95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대비 수납율 100% 실제 수납하였음.

(단위 : 원)

과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현액 대비	징수 대비
합 계	5,983,230	5,983,230	6,697,950	6,697,950	-	111.9%	100.0%
세외수입	-	-	714,720	714,720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	-	714,720	714,720	-	-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983,230	5,983,230	5,983,230	5,983,230	-	100.0%	100.0%
보전수입등	5,983,230	5,983,230	5,983,230	5,983,230	-	100.0%	100.0%

-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기타 수입으로 직원 휴직중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반납금으로 71만4,720원임.

- 보전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에어컨 설치공사 조달물품 납품 기한 지연으로 사고이월금으로 598만3,230원임.

## 나. 세출결산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862,865,000	3,868,848,230	3,487,930,067	-	380,918,163
선진의회상 정립	1,645,749,000	1,651,732,230	1,436,300,757	-	215,431,473
의정활동 지원	1,565,909,000	1,573,892,230	1,374,749,713	-	199,142,517
의정활동 홍보	79,840,000	77,840,000	61,551,044	-	16,288,956
행정운영경비	2,217,116,000	2,217,116,000	2,051,629,310	-	165,486,690
인력운영비	2,087,716,000	2,087,716,000	1,930,751,630	-	156,964,370
기본경비	129,400,000	129,400,000	120,877,680	-	8,522,320

-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 당초 예산액보다 598만3,230원 증액된 38억6,884만8,230원으로,
-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90.15%인 34억8,793만67원이 지출되었고, 3억8,091만8,163원(9.85%)이 불용되었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5억7,389만2,230원 중 13억7,474만9,713원을 집행했음.
  - ‘의정활동 홍보’는 예산현액 7,784만원 중 6,155만1,044원을 집행했음.
  -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2억1,711만6,000원 중 20억5,162만9,310원을 집행했음.
- 집행잔액 구분
  - 의정활동지원: 1억9,914만2,517원(불용률 12.65%)
  - 의정활동 홍보: 1,628만8,956원(불용률 20.93%)

- 인력운영비: 1억5,696만4,370원(불용률 7.52%)
- 기본경비: 852만2,320원(불용률 6.59%)

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원)

과목	집행잔액				
	계	낙찰차액	지출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액
합 계	380,918,163	-	377,460,163	-	3,458,000
선진의회상 정립	215,431,473	-	211,973,473	-	3,458,000
의정활동 지원	199,142,517	-	195,684,517	-	3,458,000
의정활동 홍보	16,288,956	-	16,288,956	-	-
행정운영경비	165,486,690	-	165,486,690	-	-
인력운영비	156,964,370	-	156,964,370	-	-
기본경비	8,522,320	-	8,522,320	-	-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 집행잔액 3억8,091만8,163 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에서 예산절감액으로 345만8,000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과목의 지출잔액으로 3억7,746만 163원이 발생하였음.

라. 연도별 예산 집행액 및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0	3,868,848	3,487,930	380,918	9.85%
2019	3,950,236	3,553,528	390,724	9.89%
2018	3,957,111	3,449,764	478,592	12.09%
2017	3,537,515	3,348,761	396,708	14.34%
2016	3,303,288	3,164,960	507,347	5.71%

※ 2020년 예산액은 2019년도 대비 81,388천원이 감소됨.

마. 주요사업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 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055,000	20,575,400	479,600	2.28%
공공운영비	48,402,000	22,069,940	26,332,060	54.4%
국내여비	32,080,000	19,326,600	12,753,400	39.7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494,000	42,245,820	8,248,180	16.33%
의원국내여비	11,210,000	1,365,000	9,845,000	87.82%
의정운영공통경비	109,188,000	92,991,543	16,196,457	14.8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893,000	116,600,270	4,292,730	3.55%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4,700,000	1,625,000	3,075,000	65.43%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7,000,000	12,714,400	14,285,600	52.91%
의원정책개발비	90,000,000	22,000,000	68,000,000	75.56%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6,953,000	14,966,700	1,986,300	11.72%
의원상해부담금	39,600,000	0	39,600,000	100%
시설비	75,000,000	66,789,100	8,210,900	10.95%
도서구입비	4,000,000	3,375,730	624,270	15.61%
사무관리비	22,305,000	18,773,004	3,531,996	15.83%
자산및물품취득비	22,353,000	17,990,000	4,363,000	19.52%
보수	1,840,397,000	1,690,256,290	150,140,710	8.16%
성과상여금	95,495,000	91,649,440	3,845,560	4.0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20,000	1,392,000	928,000	40.00%

바.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단위 : 원)

구분	부문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	입법및 선거관리	의정활동 내실화	홍보 자산및물품 취득비	24,353,000	2,000,000	
		의정공통업 무지 원 및 의장단 동지원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19,055,000		2,000,000

- 예산 이용·이체: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1건, 2,000,000원
  -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 임금 단가 상승 및 근무 일수 증가에 따른 전용 사용
- 예산 변경: 4건, 24,405,000원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변경	의정활동홍보	의정활동홍보내실화홍	사무관리비	22,905,000	600,000	
		의정활동홍보지역신문홍보	사무관리비	15,000,000		600,000
변경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지원공통업무의장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7,181,000	228,000	
		의정활동지원공통업무의장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9,738,000		228,000
변경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보수	1,859,474,000	19,077,000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71,607,000		19,077,000
변경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지원공통업무의장	공공운영비	31,100,000	4,500,000	
		의정활동지원공통업무의장	사무관리비	95,472,000		4,500,000

###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sup>1)</sup> 등에 따라 2020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임.
-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및 건의(권고) 사항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은 없음.

1)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1. 결산 감사위원 명단〉

검사기간	결산감사위원				
	대표위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2021. 3. 17.~ 4. 14.	한일용	김동수	유영재	정현철	이상훈

- 2020회계연도 결산 중 의회사무국의 세입결산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발생하였음. 의회사무국의 세입예산은 이례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직원 수당 지급분 반납금과 의회 시설 보강 사업 지연에 따른 사고 이월금으로서 예측 불가능성이 인정됨.
-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음.
-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8억6,884만8,2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0.15%인 34억8,793만67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3억8,091만8,163원으로 전년도 집행률 89.9%와 비교하여 다소 증가함.(0.25%)
- 최근 5년간 세출 결산액 추이는 본보고서 <표>와 같으며, 2020회계연도 예산집행 결과 불용률(9.85%)은 전년대비 0.04% 감소하였음. 그러나 마포구(일반회계) 평균 불용률(3.2%)<sup>2)</sup>과 비교하면 의회사무국의 불용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함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15% 이상인 공공운영비, 의원 국내여비 및 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원상해부담금 등의 사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그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앞으로는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 등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의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2020 회계연도 마포구 결산서

- 예산 운용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산이용·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 200만원, 1건과 예산 변경 2,440만5,000원, 4건으로 소요 예산을 사용했음.
- 예산은 원칙적으로 사업 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편성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므로 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아울러, 의회 심의·의결 권한을 존중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한 의회 승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해 향후에는 국·내외 다양한 지방도시와의 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초청·방문 등을 추진하고, 의회 전문강사 초청 세미나 등의 개최로 다각적인 의정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의 보다 면밀한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